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찬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176 발의연월일: 2025. 4. 25.

발 의 자: 박찬대·노종면·유동수

이훈기 • 허종식 • 모경종

맹성규 · 김교흥 · 임호선

김용만 • 진선미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민사사건의 관할을 지방법원과 그 지원으로 하고 있으나, 해사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중재합의 대상인 분쟁이 해사민사사건인 경우에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로 하려는 것임(안 제7조제1항, 제7조제5항 신설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박찬대의원이 대표발의한 「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안」(의안번호 제10180호), 「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0174호), 「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」(의안번호 제10175호), 「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 률안」(의안번호 제10179호), 「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0178호), 「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 안」(의안번호 제10177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 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 되어야 할 것임. 법률 제 호

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

중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지방법원 또는 지원"을 "해사국제상 사법원·지방법원 또는 각 지원"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중재합의 대상인 분쟁이 「법원조직법」 제28조의7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해사민사사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법원은 해사국제상사법원을 말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법 시행에 따라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이 법 시행일 전날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아닌 법원에 계 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관할법원) ① 다음 각 호의	제7조(관할법원) ①
사항에 대하여는 중재합의에서	
지정한 <u>지방법원 또는 지원</u> (이	<u>해사국제상사</u>
하 "법원"이라 한다)이, 그 지	법원ㆍ지방법원 또는 각 지원-
정이 없는 경우에는 중재지를	
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하며, 중	
재지가 아직 정하여지지 아니	
한 경우에는 피신청인의 주소	
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법원	
이,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	
없는 경우에는 거소(居所)를 관	
할하는 법원이, 거소도 알 수	
없는 경우에는 최후로 알려진	
주소 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	
법원이 관할한다.	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⑤ 중재합의 대상인 분쟁이
	「법원조직법」 제28조의7제1
	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해사민
	사사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
	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법원은
	해사국제상사법원을 말한다.